

용인시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

제정 2019. 12. 13 조례 제1977호
일부개정 2023. 4. 27 조례 제2385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용인시장이 시행하는 광고에 관하여 일정한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광고”란 「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3호에 따른 용인시가 홍보매체에 광고, 홍보, 공고 등을 시행하기 위한 모든 유료고지 행위를 말한다.
2. “홍보매체”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신문·인터넷신문·정기간행물·방송·옥외광고물·방송통신·뉴스통신 등을 말한다.
3. “언론사등”이란 「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방송사업자, 신문사업자,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, 뉴스통신사업자,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「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방송사업자를 말한다.

제3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용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시행하는 광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(광고 소요 예산 산정 기준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광고 소요 예산 산정 기준을 정해야 한다. <개정 2023. 4. 27>

1. 「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공하는 자료
2. 용인시정 관련 보도건수 및 자체취재기사 생성건수

3. 그 밖에 홍보매체의 영향력, 신뢰도 및 광고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

② 법 제5조에 따라 시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광고를 요청하는 때에는 광고 소요 예산이 제1항에 따른 산정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.

제5조(홍보매체 선정 등)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홍보매체 선정 의견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광고의 목적, 시민의 보편적 접근성 보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언론사등의 홍보매체 선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홍보매체를 선정하도록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언론사등이 홍보매체를 정상적으로 발행, 운영한 기간이 광고 시행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이고 용인시에 출입기자를 등록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. <개정 2023. 4. 27>

1. 일간신문: 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신문으로 경기도,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에 본사를 둔 신문사
 2. 주간신문, 인터넷신문: 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 다목 또는 라목, 제2호에 따른 신문으로 용인시에 본사를 둔 신문사
 3. 방송 : 「방송법」 제2조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텔레비전 방송 및 라디오 방송으로 경기도,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에 본사를 둔 방송사
 4. 인터넷방송 : 「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으로 경기도에 본사를 둔 방송사
 5. 뉴스통신: 「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뉴스통신으로 경기도,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에 본사를 둔 통신사
 6. 정기간행물: 「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 가목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경기도,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에 본사를 둔 정기간행물사업자
 7.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체 영향력·광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용인시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언론사
- 제6조(출입기자 등록) ① 용인시 출입기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

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별지 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 1부
 2. 언론사등의 추천 공문 1부
 3.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언론사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
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용인시 출입기자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내용 확인 후 등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- ③ 시장은 등록된 출입기자에게 보도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출입기자 등록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용인시에 등록 된 출입기자는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.

제3조(홍보매체 선정에 관한 특례) 시장은 부칙 제2조에 따라 등록한 언론 사에 대해서는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홍보매체 선 정 의견에 포함할 수 있다.

부칙 <2023. 4. 27 조례 제2385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서식]

(앞면)

용인시 출입기자 등록 신청서 (제6조 관련)

| | | | |
|--|-----|------|--|
| 성명 | | 언론사명 | |
| 주소 (회사) | 사진 | | |
| 연락처 | 휴대폰 | | |
| | 이메일 | | |
| 상기 본인은 「용인시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용인시 출입기자 등록을 신청합니다. | | | |
| 신청인 | | (서명) | |
| 용인시장 귀하 | | | |
| ※ 첨부서류 1. 언론사등의 추천 공문 1부 2.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언론사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. 반명함판 사진 1매(JPG파일) | | | |

(뒷면)

**「용인시 출입기자 등록」을 위한
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**

용인시 출입기자 등록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·이용 하고자 하오니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개인정보 수집·이용 내역

| 항 목 | 수집 목적 | 보유 기간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성명, 전화번호, 이메일, 사진 | 용인시 출입기자 등록 및 보도자료 제공 | 용인시 출입 등록 언론사등 재직시까지 |

※ 개인정보는 용인시 출입기자 등록 및 보도자료 제공을 위해서만 사용되며, 용인시 출입 언론사등 퇴직시 폐기 처리됩니다. 개인정보를 수집, 이용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거부시 출입기자 등록이 제한되며 보도자료 제공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.

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·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?

| | | | |
|----|--|-----|--|
| 동의 | | 미동의 | |
|----|--|-----|--|

년 월 일

본인 성명

(서명 또는 인)

용인시장 귀하